

인천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단2044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양선화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채희철, 박병주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3분의 1 지분에 관한 D과 피고 B 사이의 2019. 1. 10.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33,774,533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774,5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D의 1/3 지분에 관한 D과 피고 B 사이의 2019. 1. 10.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33,774,533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C은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33,774,53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위와 같은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고 선의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진수

청 구 원 인

1.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소외 D와 사이에, 소외 D이 소외 E 주식회사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매함에 있어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담보할 목적으로 할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아래와 같은 증권을 피보험자에게 발행교부하였습니다.

아 래

보험계약체결일: 1995. 12. 4.

증권번호: F

보험가입금액: 금9,680,000원

보험가입기간: 1995. 12. 1.부터 1998. 11. 30.

보증내용: 자동차할부금

2. 보증보험계약 내용 및 지연손해금의 약정

위 보증보험계약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원고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보험금청구 및 지급 등

가. 그 후 보험계약자인 소외 D은 1995. 12. 30. 피보험자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피보험자는 원고 발행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996. 4. 16.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9,326,562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등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소외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23990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1. 「피고는 원고에게 31,417,960원과 그 중 6,899,142원에 대하여 2010.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선고가 있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다.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구상채권액은 금41,182,326원(=지급보험금잔액

6,899,142원 + 보험금지급일다음날인 1996. 4. 17.부터 2020. 1. 21.까지의 미수이자 금33,542,328원 + 채권보전비용등 미수금잔액 740,856원, 2020. 1. 21.현재)입니다.

4. 사해행위

가. 재산의 상속 및 협의분할

소외 D의 모친인 소외 망 G이 2018. 12. 27.에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이 자녀인 소외 D, H, 피고 B에게 공동으로 상속 되었으며, 위 상속인들은 2018. 12. 27.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15. 접수 제16536호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등기소 2019. 1. 15.자 접수 제16537호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소외 D의 상속지분은 등기소에 대한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으로 추후 확정하겠습니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

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다. 사해행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인 소외 D이 1995. 12. 30.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외 D에 대한 구상채권이 확정된 이후인 2018. 12. 27.에 모친인 망 G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었으나, 위 상속인들은 2018. 12. 2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소외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분의 1지분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 B은 2019. 1. 10. 매매를 원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채무자인 소외 D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위 계약에 의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행위는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수익자인 피고 B과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는 명백합니다.

라. 이에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합니다.

5. 원상회복방법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등).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득자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소외 주식회사 I의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세로 추정되어지는 금110,000,000원 중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으로 보여지는 금36,000,000원(채권최고액 금43,200,000원 중 담보비율 120%감안)을 공제한 잔액 금74,000,000원(110,000,000 - 36,000,000) 중 소외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24,666,666원($74,000,000 \times 1/3$ 지분)에 대하여(주식회사 I에 대한 금융거래채출명령신청 등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입증하겠습니다)소외 D과 피고 B 사이의 2018. 12. 27.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D의 3분의 1지분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24,666,666원의 범위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수익자인 피고 B과 전득자인 피고 C은 각자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결 론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원고에 대한 채무자 D의 구체적 상속지분 : 1/3

갑 제5호증(G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D의 모친인 망 G(2018. 12. 27. 사망)의 공동상속인은 그 자녀들인 ① 소외 H, ② 피고 B, ③ D 3명이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D의 법정 상속지분은 1/3입니다(갑 제5호증 - 가족관계증명서).

2. 가액배상액의 범위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기존부터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된 근저당권자인 I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일인 2019. 4. 30. 당시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8,676,401원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갑 제6호증, 여신 거래명세표).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은 시가 110,000,000원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8,676,401원을 공제한 잔액인 101,323,599원 중 D의 상속지분 1/3에 해당하는 33,774,533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1,182,326원이므로 이중 적은 금액인 33,774,533원이 가액배상액이라 할 것입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소외 D(주민등록번호 1)과 피고 B 사이의 2019. 1. 10.자 상속 재산 협의분할계약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D의 3분의 1 지분 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금33,774,533원의 범위내 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33,774,5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동구 J

인천광역시 동구 K

L아파트 M동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동구 N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12층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O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3층 P호 75.78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동구 J 대4318㎡

2. 인천광역시 동구 K 대5019.2㎡

대지권의 종류 : 1,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9337.2분의 31.6

- 이 상 -

